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6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이수진 · 김원이
문진석 · 윤종균 · 김교홍
염태영 · 김준혁 · 이강일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화, 살인, 약취·유인, 강간·추행, 절도·강도, 폭행,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, 보호관찰명령, 치료감호선고, 「소년법」상의 장·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,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,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아동학대살해·치사, 아동학대

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12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,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,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,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 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)

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,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,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) ① 검사(군검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,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,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치료감호선고,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(이하 “수형인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	제5조(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생략)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	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5조(제13조

9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<u>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</u> 9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